

# 무배당하나 SAFE 연금보험 II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 이 유 서

ALM 적 요소를 도입하여 지표가 되는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적립이율을 장기간 (최장 10 년)에 걸쳐 보장하고 해외 투자를 통해 보다 높은 수익율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회사 재무건전성 유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연금 보험을 개발하고자 함.

## 확 인 서

무배당하나 SAFE 연금보험 II 을 개발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04년 9월 일

하 나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

선 임 계 리 사 윤 기 수

#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 무배당하나 SAFE 연금보험 II

### 1. 보험종목 및 명칭

구 분	연금지급형태	피보험자 범위
(무)하나 SAFE 연금보험 II	종신연금형 [정액, 체증(5·10%)]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1형 ( 10년 이율확정형)	확정연금형 [7·10·15·20년형]	개인연금형
2형 ( 7년 이율확정형)		
3형 ( 5년 이율확정형)	상속연금형	개인연금형

### 2. 보험료 납입기간(주기), 연금개시연령,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주기)	연금개시연령	보험기간
일시납	- 개인연금형 :45~80 세형 - 부부연금형 :48~80 세형	◎ 종신 - 제 1 보험기간 책임개시일로부터 생존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제 2 보험기간 제 1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단, 확정연금형의 경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단,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가입일로부터 가입연령에 의해 구분되어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연령에 한함

### 3. 가입연령

구분	연금개시연령	가입연령
1형	45~80 세형	15 ~ (연금개시연령 -10)세
2형	45~75 세형	15 ~ (연금개시연령 -7)세
	76~77 세형	15 ~ 68 세
	78~80 세형	15 ~ 67 세
3형	45~69 세형	15 ~ (연금개시연령 -7)세
	70~71 세형	15 ~ (연금개시연령 -8)세
	72~73 세형	15 ~ (연금개시연령 -9)세
	74~75 세형	15 ~ (연금개시연령 -10)세
	76~77 세형	15 ~ 65 세
	78~80 세형	15 ~ 64 세

#### 4. 납입보험료 한도

US\$ 5,000 ~5,000,000

#### 5. 배당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음.

#### 6.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일시납보험료의 100%로 함.

#### 7. 기초율 변경시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 인하나 보험금 증액 등을 할 수 있다.

#### 8. 기타

##### 가. 통 화

- (1) 이 보험계약의 통화는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의 통화로 한다.
- (2)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미국 통화로 한다.

##### 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부리이율

- (1) 이 보험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부리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2) (1)호의 공시이율은 매월1일과 16일에 회사가 1형(10년 이율확정형), 2형(7년 이율확정형), 3형(5년 이율확정형)별로 각각 정한 이율로 하며, 보험가입시점의 보험종류 별 공시이율은 보험가입시점부터 각각 최초10년, 7년, 5년간은 확정되어 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의 공시이율 확정기간(이하 "이율확정기간"이라 한다) 이후의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이 보험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은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한다.

$$\text{공시이율(\%)} = \{A - 1\% \} \pm \text{조정이율}$$

[주]

ㄱ) 이율확정기간중

- A : 이율 확정기간이 10년, 7년, 5년인 경우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가 인터넷(<http://federalreserve.gov/releases/>)을 통하여 매일 공시하는 10년, 7년, 5년 미국 달러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s)율의 평균값을 매월 1일과 16일 정하여 적용한다. 위의 평균값은 매월1일과 16일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4번째 영업일에서 13번째 영업일까지의 10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이 사업방법서의 공시이율 산출에 적용하는 미국달러 금리스왑률의 평균값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ㄴ) 이율확정기간 이후

• A :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가 인터넷(<http://federalreserve.gov/releases/>)을 통하여 매일 공시하는 3년 미국 달러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s)율의 평균값을 매월 1일과 16일 정하여 적용한다.

ㄷ) 조정이율 : 시장금리의 대표성과 객관성 및 실제금리 적용시의 용이성을 고려 하여 미국달러 금리스왑율을 지표금리로 사용하지만 과거 지표금리가 장래에 적용됨으로써 실제 적용시점의 지표금리와 금리차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많은 경우 실제 투자자산의 종류 및 구성비가 미국 달러 금리스왑과는 다르게 되므로, 투자되는 자산의 수익율(이율확정기간 중의 공시이율에 대하여는 투자될 자산의 예상수익율, 이율확정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에 대하여는 이미 투자된 자산의 현재 수익률과 향후 투자될 자산의 예상수익률의 추정 가중평균값)을 고려하여 ±20% 범위내에서 조정이율을 정하여 적용한다.

(3) 1형(10년 이율확정형)과 2형 (7년 이율확정형)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시점부터 1년간 각각 1.0%와 0.5%의 금리(이하 “ 초년도 보너스 부리이율” 이라 한다)를 더하여 부리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보험의 1형(10년 이율확정형)과 2형 (7년 이율확정형)의 계약이 보험계약일부 터 각각 10년과 7년전에 해지되는 때에는 “ 초년도 보너스 부리이율”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2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한다.

(5)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부리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율확정기간 이내에는 연 복리1.5% (일 복리0.004079%)이고 이율확정기간 이후에는 연 복리 1.0% (일 복리 0.002726%)로 한다.

다. 이 상품의 약관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약관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 이율로 한다.

라.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의 시장가격조정률(MVA) 적용

(1)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는 연금계약 적립금액에 (1-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한다.

(2) 시장가격조정률(MVA : Market Value Adjustment)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MVA = 1 - \left\{ \frac{1 + \text{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1 + \text{해지시점의 공시이율} + 0.5\%} \right\}^{\text{잔여월수}/12}$$

단, 잔여월수는 해지일부터 이율확정기간 말일까지의 월수로 하되, 1 개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하여 계산한다.

(3) 시장가격조정률(MVA)이 20% 이상인 경우는 20%를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4) 장래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위의 공시이율과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후에 이를 변경하며, 계약자에게 그 변경 내용을 변경일부 터 1 개월 전에 통지한다.

마. 자산의 운용

- (1) 이 보험의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 계리하여 운용한다.
- (2) 이 보험의 자산은 보험종류별 이율확정기간에 해당 이율을 보증할 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고채, S&P 에서 신용등급 BBB-이상(또는 이와 동등한 신용등급)의 회사채, 유동성확보를 위한 단기금융 상품 및 현금을 그 주된 운용 자산으로 한다.

바. 책임준비금의 원화 평가에 관한 사항

- (1) 책임준비금의 원화 평가는 평가일 기준 “ 한국은행 공시 환율” 의 증가 환율을 적용한다.
- (2) 평가일 증가 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직전 고시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 (3) 장래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기준환율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후에 이를 변경한다.



(별첨 제 1 호)

##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 2 호)

##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